

# 예산총칙

2020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305,774,217	39,173,227
일반회계	1,136,300,775	34,089,023
특별회계	169,473,442	5,084,203
공기업특별회계	147,911,642	4,437,34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4,940,514	1,048,21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6,465,333	1,393,96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6,505,795	1,995,174
기타특별회계	21,561,800	646,85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33,200	24,996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7,481,839	224,45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234,509	127,035
수질개선특별회계	6,054,033	181,621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367,319	71,02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90,900	17,72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545,384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65,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